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3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성장촉진지역 등에 대한 도서지역 교통편의 증진 시책 추진〉

■정점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269호)

2024. 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 참고자료	6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정점식의원 등 10인
2. 제안연월일 : 2024. 7. 26.
3. 회부연월일 : 2024. 7. 2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균형발전계획과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두고 있으며, 특별회계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사업으로 농산어촌 등의 개발사업, 지역사회기반시설의 확충 및 개선 관련 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특별회계를 통해 보조할 수 있는 사항에 교통이 열악한 도서지역 등에 대한 교통여건 개선에 관한 내용이 부재함에 따라 도서지역에 대한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서 추진되고 있는 성장촉진지역 등의 개발 사항에 도서지역 교통편의 증진 및 교통망 등 기반시설 확충을 추진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가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0조).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농산어촌 등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특성에 맞는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서지역 교통편의 증진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

[표 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0조(성장촉진지역 등의 개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농산어촌 등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특성에 맞는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u>교통망 등 기반시설의 확충</u> , 주민 소득창출 기반의 확충, 향토자원의 개발·활용, 도시환경의 개선과 교육·의료·복지의 증진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20조(성장촉진지역 등의 개발) ----- ----- ----- ----- <u>도서지역 교통편의 증진 및 교통망 등 기반시설의 확충</u> ----- ----- -----.

현행법은 생활환경이 열악한 성장촉진지역, 지리적·사회적으로 불리한 환경에 놓인 특수상황지역 및 농산어촌을 대상으로 교통망 등 기반시설의 확충 등에 관한 개발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그리고 각종 지역균형발전시책 지원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지특회계”)를 설치하도록 하고, 지특회계의 세출사업으로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농산어촌 기초생활권 생활기반의 확충과 관련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및 국토교통부는 지특회계로 해당 지역에 대한 교통망 확충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참고 2).

[표 2] 성장촉진지역 등 정의규정 및 개발시책 근거 규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u>성장촉진지역</u>”이란 <u>생활환경이 열악하고 개발수준이 현저하게 저조하여 해당 지역의 경제적·사회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도로, 상수도 등의 지역사회기반시설의 구축 등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지역</u>으로서 소득, 인구,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0. “<u>특수상황지역</u>”이란 <u>남북의 분단 상황 또는 지리적·사회적 요인으로 불리한 환경에 놓이게 되어 일정기간 동안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행정 지원 등 특수한 지원 조치가 필요한 지역</u>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u>접경지역 지원 특별법</u>」 제2조제1호에 따른 <u>접경지역</u> 나. 「<u>섬 발전 촉진법</u>」 제4조제1항에 따른 <u>개발대상섬</u>. 다만, 성장촉진지역에 해당하는 섬은 제외한다. 다. 「<u>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u>」 제2조제1호에 따른 <u>새만금사업지역</u>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지역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11. “<u>농산어촌</u>”이란 「<u>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u>」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u>산림기본법</u>」 제3조제2호에 따른 산촌 및 「<u>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u>」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제20조(성장촉진지역 등의 개발) <u>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농산어촌 등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특성에 맞는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교통망 등 기반시설의 확충, 주민 소득창출 기반의 확충, 향토자원의 개발·활용, 도시환경의 개선과 교육·의료·복지의 증진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u>

제78조(지역자율계정의 세입과 세출)

② 회계의 지역자율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의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한 보조

가.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농산어촌 및 도시활력증진지역 등의 개발 사업으로서 다음 각각의 사항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기초생활권 생활기반의 확충과 관련한 사업

- 1) 「섬 발전 촉진법」에 따른 섬 발전에 관한 사항
- 2)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에 따른 지방소도읍 육성에 관한 사항
- 3)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 개발에 관한 사항
- 4)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생활환경 정비, 전원마을 조성,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에 관한 사항
- 5)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 개발에 관한 사항
- 6) 「어촌·어항법」에 따른 어촌 개발에 관한 사항
- 7)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 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 9) 「산림기본법」과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촌 개발에 관한 사항
- 10) 「수도법」에 따른 지방상수도 개발에 관한 사항
- 11)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에 따른 어촌특화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그런데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농산어촌 지역 중에서도 도서 지역은 특성상 내륙과의 연결성 및 교통 편의성이 떨어지는 편이고, 이로 인해 생활기반 시설 및 서비스가 함께 낙후되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이같은 도서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정안은 교통편의 증진 시책을 추진하도록 명시하고 관련 예산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며, 이는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촉진하려는 동 법률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임.

참고로, 국토교통부는 현행 규정에 의해서도 교통망 확충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면서 도서지역 교통편의를 증진할 수 있다는 입장¹⁾이고, 기획재정부도 동 개정안과 유사한 내용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²⁾³⁾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같은 견지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456

1) 관련 예산 사업 참고 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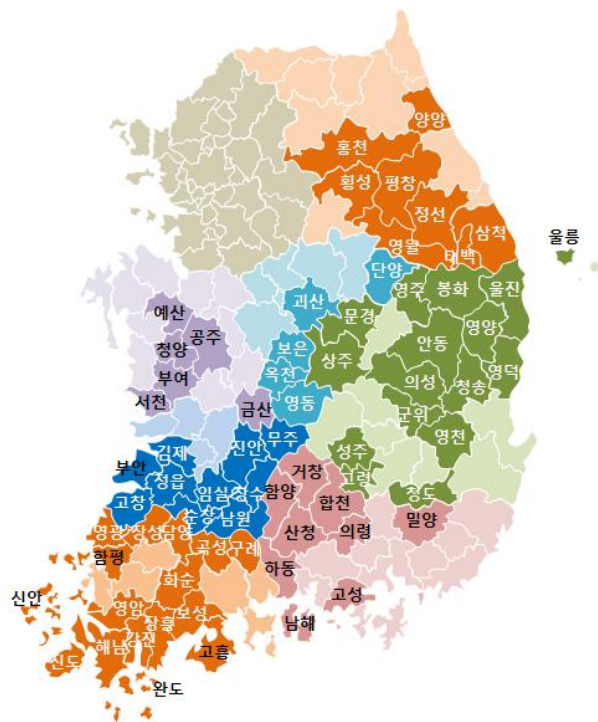
2) 의안번호 제2202340호, 정점식 의원 대표발의,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 지특회계 지역자율계정 세출사업 유형으로 “바. 도서지역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교통수단의 개선 및 확충에 관한 사업”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임.

참고1 성장촉진지역 · 특수상황지역 개요

□ 성장촉진지역

- (개념)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개발수준이 현저하게 저조하여 해당지역의 경제적·사회적 성장 촉진을 위해 필요한 지역사회기반시설의 구축 등에 국가와 지자체의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지역(「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2조제9호)
- (지정절차) 국토부가 5년마다 인구·소득·재정·접근성 등을 평가하고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지방분권균형발전법 시행령」 제2조)
- (현황) 70개 시·군이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 ('19.9.10. 고시)



강원 (8)	태백시 삼척시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홍천군 양양군 정선군
충북 (5)	보은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 옥천군
충남 (6)	공주시 서천군 금산군 부여군 청양군 예산군
전북 (10)	남원시 김제시 정읍시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전남 (16)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함평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경북 (16)	상주시 안동시 영천시 영주시 문경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경남 (9)	밀양시 의령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 특수상황지역

- (개념) 남북 분단 상황 또는 지리적·사회적 요인으로 불리한 환경에 놓이게 되어 일정기간 동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지원 등 특수한 지원조치가 필요한 지역(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2조제10호)

○ (지정요건 및 지정현황)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

* 현재 인천·경기·강원 15개 시·군이 접경지역으로 지정

인천 (2)	강화군 용진군
경기 (7)	동두천시 고양시 파주시 김포시 양주시 포천시 연천군
강원 (6)	춘천시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 「섬발전 촉진법」에 따른 개발대상섬(성장촉진지역에 해당하는 섬 제외)

* 개발대상섬(섬발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행안부고시로 지정)으로 지정된 371개 섬 중, 성장촉진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섬 188개가 특수상황지역에 해당

인천 (32)	중구(2), 강화군(8), 용진군(21), 서구(1)
경기(4)	안산시(2), 화성시(2)
충남(21)	보령군(13), 서산시(4), 홍성군(1), 당진군(3), 태안군(2)
전북(16)	군산시(16)
전남(48)	목포시(5), 여수시(42), 무안군(1)
경남(57)	통영시(38), 사천시(6), 거제시(8), 창원시(5)
제주(8)	제주시(6), 서귀포시(2)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새만금사업지역

*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 일부(면적 409km²)가 해당

참고2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및 농산어촌 지역 등의 교통망 확충 예산 사업

사업명	소관 부처	사업내용	24 예산 (백만원)
벽지노선 지원 (4539-601)	국토 교통부	- 8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벽지 버스노선에 대해 국가에서 그 일부를 지원 - 벽지 버스노선을 안정적으로 운행하여 교통사각지대 해소 등 교통복지증진에 기여하는 위한 사업	37,537
농촌형 교통모델 (4170-301)	농림 축산 식품 부	교통취약 농촌 지역에 마을버스·택시 등을 활용한 농촌형 교통서비스 제공을 통해 공공서비스와의 접근성 제고로 농촌주민의 이동권 보장 및 삶의 질 개선	24,924
도시형 교통모델 ⁴⁾	국토 교통부	- (공공형버스)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운행횟수 및 노선 조정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방지, 주민 이동권 보장을 위해 소형버스, 콜버스 등 수요 응답형 버스 교통수단 등 도입 지원 - (공공형택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입·운영 중인 공공형 택시의 전국적 확대를 통해 대중교통 사각·취약지대 주민들의 교통편의 증진 및 이동권 보장	36,036
성장촉진 지역개발 (5549-301)	국토 교통부	성장촉진지역에 대해 기반시설* 구축 등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사회적 성장을 촉진하고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등 삶의 질 제고 * 도로 등 교통망 구축 포함	206,381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4)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내 계정별로 총 3개 세부사업[(4546-301, 지역자율계정), (4547-301, 제주계정), (4548-301, 세종계정)]을 각각 추진하고 있음.